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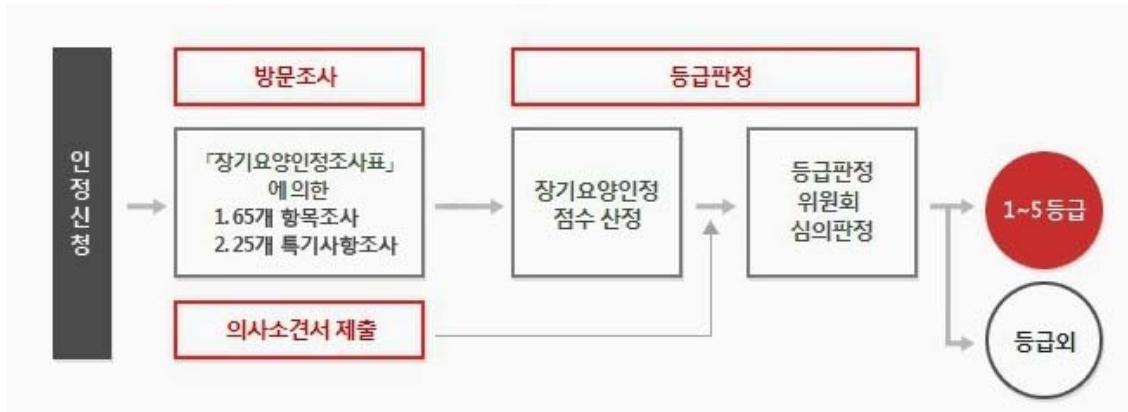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026년도)

- 은나무실버복지센터 -

제 4 장 요양급여제공절차 및 비용변경 방법

제17조 (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자 모집 및 이용절차)

1. 등급판정신청절차



- ① 신청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
- ② 방문조사(공단직원)
-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회)
-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(장기요양센터)
- ⑤ 서비스 이용(장기요양기관)

2.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

- ① 온(블로그).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
- ② 자원봉사를 통한 제도소개와 기관 홍보, 간판 이용 광고효과
- ③ 이용상담(전화 혹은 내방)
- ④ 가정방문상담
- ⑤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
- ⑥ 서비스 실시 및 사후관리

제18조(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)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(보호자)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

1. 계약기간 :

-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②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
-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

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3. 서비스 월이용료 :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받고,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. (자세한 사항은 [제5장 21조]의 내용을 참고한다.)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▶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
- ▶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▶ 기관의 만족도조사,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▶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
- ▶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▶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

5. 계약의 해지 : 계약해지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.

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.

- ▶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- ▶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- ▶ 폭행, 욕설,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,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- ▶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

②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종결을 원하거나,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(또는 보호자)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.

③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.

제19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)

1.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방법 : 수급자(보호자)는 서비스제공 중 급여계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서비스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(보호자)에게 통보 한다.

2.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절차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. (다만, 1항과 4항의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.)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
-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제 5 장 요양 급여내용 및 비용부담 규정

제20조(장기요양급여내용)

구분	사업명	세부사업내용
장 기 요 양	방문요양	☐ 신체활동 지원 : 식사, 이동도움, 체위변경, 신체기능유지 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: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☐ 개인활동 지원 : 외출 시 동행, 일상업무대행 ☐ 정서 지원 :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도움
		☐ 인지활동지원 : 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 ☐ 인지관리지원 :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
	방문목욕	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)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※ 방문목욕(욕조사용), 일반목욕
	돌봄 SOS	☐ 방문요양에 준함

제21조(재가급여의 월 한도액)

1.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,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<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(2026년 1월 1일)>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-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-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(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의 변경시 장기요양급여 이용표준약관은 자동변경됨)

제22조(본인부담금)

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(15%)를 본인이 부담한다.
2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는 6%와 9%, 국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면제(0%)이다.
3.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.

제23조(방문요양)

1.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,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 (서비스)를 이용한다.
2. 방문요양 시간별 급여책정 금액(1회 방문당 산정기준)은 다음과 같다.

분류번호	분 류	금 액(원) '26년
가-1	30분 이상	17,450
가-2	60분 이상	25,320
가-3	90분 이상	34,120
가-4	120분 이상	43,430
가-5	150분 이상	50,640
가-6	180분 이상	57,020
가-7	210분 이상	63,530
가-8	240분 이상	70,080
심야가산	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%를 가산할 수 있다.	
휴일가산	"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"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%를 가산할 수 있다.	

-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.
(단, 210분,240분 수가는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며, 동 수가 산정 시 다른 수가는 산정이 불가능하다.)
- ② 1일 3회(1회 최대 120분 범위 내)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.
- ③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,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.

3.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

-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·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,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- 15 -

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,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“가-3”(90분)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.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.

- ② 가사활동 지원(취사, 청소, 세탁 등)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.
- ③ 정서지원(말벗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)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 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.
- ④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
 - ▶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.
 - ▶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.
 - ▶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장에 소속되어 1일8시간, 월20일 이상 (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) 상근하는 경우 가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.
- ⑤ 1회 30분 이상 연속 급여제공
 - ▶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3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 (월4일에 한하며 1,2등급은 월8회)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.
 - ▶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.

4.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.

5. 급여제공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아니한다.

제24조(방문목욕)

- 1.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,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(물, 비누, 수건, 욕조, 목욕의자, 로션 등)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

- 방문목욕 급여기준 (방문 당)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
나-1	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(차량내)	88,990원
나-2	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(가정내)	80,230원
나-3	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	50,100원

2.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3. 방문목욕은 목욕준비, 입욕시 이동보조, 몸씻기, 머리감기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,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.
4. 차량 이용 방문목욕(나 -1)
 -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,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.
 - ② 욕조, 급탕기, 물탱크, 펌프,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,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“이동목욕용”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.
 - ③ 욕조, 펌프,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 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“나 -1”의 90%를 산정한다.
5.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(나 -2)
 - ①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
 - ②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
 - ③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,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 - ④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“나-2”의 80%를 산정한다.
 - ▶ 욕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(목욕의자 이용 등)
 - ▶ 기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
6. 서비스 제공시간, 장기요양 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된다.
7.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8.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, 목욕의자, 세면용품 등 목욕용장비,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,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되며, 미 입욕 시에는 방문차량 미 이용 시 급여의 80%수가를 적용 한다.